

부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3. 19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3. 21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5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총무위원회(97년 3월 26일) 상정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총무위원회(97년 5월 2일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복지국장 박상익)

가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 및 시민봉사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

나. 주요골자

- 설치장소(안 제2조)
 -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 : 시·구 민원실(단, 구청은 필요한 분야에 한함)
 - 시민봉사실 : 터미널, 전철역 등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
- 운영분야(안 제3조, 제4조)
 -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 : 행정, 고충민원, 취업정보, 법률, 소비자보호상담
 - 시민봉사실 : 제 증명 발급대행 및 민원상담
- 자격(안 제5조)
 - 행정, 고충, 취업정보상담위원 :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전직공무원
 - 법률상담위원 : 변호사 또는 법률상식이 있는 자
 - 소비자보호상담원 :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추천한 자
 - 시민봉사실 근무자 :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
- 임기(안 제6조)

-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근무시간(안 제7조)
 -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 :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 준용
 - 시민봉사실
 - 오전 07:00~18:30
 - 오후 18:00~20:00(동절기 17:00~19:00)
- 실비보상(안 제9조)
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등 지급가능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로 상담자 및 봉사실 근무자를 규정하게 되면 보수가 인상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	○ 대부분 연금 수혜자이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.
○ 상담위원 및 근무자를 전직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 아닙니까?	○ 행정에 관한 상담원이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만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.
○ 시민봉사실 근무자를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?	○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.
○ 계속 연임하는 것은 근무 의욕이 떨어져서 시민봉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?	○ 시민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○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운영해 왔습니까?	○ 네, 그렇습니다.
○ 조례 제정이 늦은 것 아닙니까?	○ 네, 시기가 좀 늦습니다.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수정안

의안번호	제231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5. 6.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요건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봉사를 위한 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"5급 이상의"를 삭제하고 "이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"로 대체하고, 제4호 중 "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"을 삭제하고 "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"로 수정하며
- 안 제6조제1항 "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"를 "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"로 수정함.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수정안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행정 상담, 고충민원상담, 취업정보상담 :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는 자
- 2. 법률상담 :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
- 3. 시민봉사실 근무자 :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

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5조(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행정상담, 고충민원상담, 취업정보상담 :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</p> <p>2. 법률상담 : 변호사 또는 법률상식이 있는 자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시민봉사실 근무자 :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</p> <p>제6조(임기) ①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행정상담, 고충민원상담, 취업정보상담 :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.</p> <p>2. 법률상담 :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시민봉사실 근무자 :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</p> <p>제6조(임기) ①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부천시시민봉사실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설치장소)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(이하 "정보센터"라 한다.) 및 부천시시민봉사실(이하 "시민봉사실"이라 한다.)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한다.

1. 정보센터

- 가. 부천시청 민원봉사실
- 나. 구청 민원봉사실(단, 필요한 분야에 한한다)

2. 시민봉사실

- 가. 버스터미널, 전철역 등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
- 나. 기타 시민봉사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

제 3 조(정보센터) ① 정보센터에서는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창구 및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행정, 고충민원, 취업정보, 법률, 소비자보호 등 필요에 따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정보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.

- 1. 각종 행정정보
- 2. 시의 인·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
- 3.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사항
- 4.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등
- 5.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
제 4 조(시민봉사실) ① 시민봉사실에는 근무자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생업관계 등으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시민의 민원을 대신 처리한다. 단, 시민봉사실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그 권한을 대행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.
- 2. 방문객에 대한 길안내 및 행정정보제공 등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신청인 본인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개소당 2명 이하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.

제 5 조(상담위원 및 근무자의 위촉)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봉사실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행정상담, 고충민원상담, 취업정보상담 :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
2. 법률상담 :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
3. 소비자보호상담 :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시민봉사실근무자 :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행정상담은 총무처장관이 위촉한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6 조(임기) ①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(근무시간) ①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상담위원 :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
2. 시민봉사실근무자 :

가. 오전 : 07 : 00~08 : 30

나. 오후 : 18 : 00~20 : 00(동절기 17 : 00~19 : 00)

② 시민봉사실 근무자는 오전과 오후 모두 근무하여야 한다. 단, 2인이 근무할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.

제 8 조(해촉)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
4.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
제 9 조(실비보상)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록유지)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종합정보센터상담일지를 시민봉사실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민봉사실운영일지를 각각 기록·관리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에 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근무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